

의안번호	제 834 호
의 결 연 월 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오영탁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10일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4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발 의 자 : 오영탁,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조성태,

1. 개정이유

- ‘문화재’를 ‘국가유산’ 체제로 개편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
- 또한 국가유산청의 “문화재지킴이”가 “국가유산지킴이”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2024.3.19.)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
- 이에, 국가유산 체제에 발맞춰 관련 조례인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 따른 제명 변경
 - －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진흥에 관한 조례
 - 충청북도 국가유산지킴이 진흥에 관한 조례
- 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
 - － “문화재지킴이” → “국가유산지킴이”(안 제1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나. 관련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로 한다.

제2조 중 ““문화재지킴이”란”을 ““국가유산지킴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지킴”을 각각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u>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u>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u>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u>문화재지킴이</u>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u>충청북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u>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u>----- ----- ----- <u>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u>----- ----- -----. 제2조(정의) “국가유산지킴이”란 ----- ----- ----- ----- -----. 제3조(책무) ----- ----- ----- ----- ----- ----- ----- <u>국가유산지킴이</u>----- ----- -----.

제4조(추진계획)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제4조(추진계획) ----- 국가유산지킴이-----

-----.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
- 국가유산지킴이-----

-----.

② -----
국가유산지킴이-----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 국가유산지킴이-----

-----.

제7조(홍보) ----- 국가유산지킴이-----

-----.

제8조(교육) -----
----- 국가유산지킴이-----

-----.

제9조(포상) -----

여 우수한 <u>문화재지킴이</u>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u>국가유산지킴</u>----- ----- -----.
--	--

관련법령 발취

□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2024. 3. 19)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산기본법」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호의식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란 국가유산 지킴이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1호

○ 사 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